

어업 관련 자격제도 심층 조사

1. 면허어업

정의 및 자격 요건: 면허어업은 일정한 수역에서 특정 어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면허권자로서 면허어업을 허가하며, 이에 따라 어업권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망어업(고정어망 설치)이나 각종 양식어업, 마을어업 등은 면허어업에 해당하며, 면허를 받은 자는 해당 수면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1 .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면허권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함으로써 물권적 성격의 어업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어업권은 민법상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정도로 강한 재산권으로 인정되며, 상속·양도도 가능합니다

신청 및 발급 절차: 면허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지자체 장에게 어업면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정부24 등의 온라인 시스템이나 관할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 신청 시에는 수면의 위치와 면허 받고자 하는 어업의 종류, 시설계획서 등이 포함된 서류를 내야 하며, 관할 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 면허가 부여됩니다. 면허증이 발급되면 해당 어업을 면허기간 동안 영위할 수 있고, 면허세 등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면허기간 만료 전에는 연장 신청도 가능하며(한번에 최대 10년 연장), 면허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취소되거나 어장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기관: 면허어업은 「수산업법」 제7조에 근거하며, 세부 절차는 동법 시행령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됩니다. 관할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수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외해 (外海) 양식어업 등 일부 특정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면허권자가 됩니다. 면허 내용(어업권)은 수산업법에 따라 관리되며, 어장의 시설기준, 관리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의 고시와 지자체 조례에 따릅니다. 행정기관은 어장의 환경보전과 어업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 시 면허어업의 제한·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3.

최신 정책 변화: 최근 양식업 관련 제도 개편이 면허어업 분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육상양식어업도 면허 대상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허가제로 전환되었다가 한때 신고제로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4 . 그러나 남획 방지와 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양식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서 육상양식업과 종묘생산업이 다시 허가어업으로 엄격히 관리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5 . 이에 따라 기존에 신고만으로 가능하던 육상양식장은 이제 허가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5 . 이러한 정책 변화는 무분별한 신규 진입을 제한하고 어업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수산자원의 지속 이용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2. 허가어업

정의 및 자격 요건: 허가어업은 수산자원 보호나 어업질서 유지 등을 위해 행정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 어업 형태를 말합니다. 일정한 경우에만 자유로운 어업을 허용하도록 한 제도로,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어선 규모와 어업종류에 따라 허가권자가 다르며, 근해어업(동력어선 8톤 이상 등)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 연안어업(소형 동력어선등)은 시·도지사의 허가, 구획어업(일정 수역에 어구 설치)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허가어업에는 트롤, 저인망, 안강망, 자망 등 다양한 업종이 있으며, 허가를 받으려면 어선·어구의 기준을 충족하고 수산자원 관리상 허가정수(許可定數) 내에 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어업 자원의 상태나 기존 어업경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어업허가의 총량(정수)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허가를 제한합니다.

신청 및 발급 절차: 허가어업을 원하는 경우 해당 어업 종류에 따른 관할 허가기관에 어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근해어업은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를 통해 신청하고, 연안어업·구획어업은 시·도 또는 시·군·구 수산부서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어선등록증 사본, 어업경력 입증서류, 어구명세 등 요구된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일부 어업은 어업시험 합격이나 기술자 겸비 등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며,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허가 시 어선 톤수, 마력, 조업구역, 사용어구 등에 조건이 부과될 수 있고,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시 승인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어업도 유효기간은 5년이며, 기간 연장이나 어선 대체 시에는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기관: 허가어업은 「수산업법」 제40조~제46조에 근거하고,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서 세부 절차와 서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소관 업종에 대한 허가권자이며, 원양어업의 경우 별도 법률인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허가어업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수산업법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고, 허가어선의 어획할당량(TAC) 관리나 조업자 준수사항 등은 「수산자원관리법」등 관련 법령과 연계되어 시행됩니다. 허가어업자는 어업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관할 관청의 지도를 받아 자율관리 어업 등의 형태로 책임있는 자원관리 의무를 집니다.

최신 정책 변화: 허가어업 분야에서는 자원관리 강화와 규제 완화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양식업의 허가제 전환처럼, 기존에 신고제로 운영되던 일부 업종(육상양식업, 종묘생산업 등)이 허가제로 격상되어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5 . 또한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 관리체계도 개선되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도입된 업종은 허가 시 어획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어선의 첨단화와 규모 변화에 맞춰 허가 기준을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형어선의 경우 어획량이 적은 정치성 구획어업 신규 신설 등으로 지역 소규모 어업인의 진입기회를 늘리는 정책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6 . 전반적으로 허가어업은 수산자원 남획을 막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구현하기위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고 있습니다.

3. 신고어업

정의 및 자격 요건: 신고어업은 면허어업이나 허가어업에 속하지 않는 비교적 소규모·경미한 어업으로서, 행정기관에 신고만 하면 영위할 수 있는 어업을 말합니다 7 .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나잠어업(산소장비 없이 맨몸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이나 맨손어업(연장 도구 없이 손이나 간단한 도구로 포획)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어업은 간단한 신고 절차를 거쳐 허용되며,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은 대체로 5년입니다. 신고어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업장소 관할구역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 등 거주요건을 갖춘 어업인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지역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외지인의 채취를 막기 위한 요건입니다. 신고 대상 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허가나 면허 대상이아닌 기타 모든 어업은 원칙적으로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7 .

신청 및 발급 절차: 신고어업은 절차가 비교적 간소합니다. 어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신고확인증)을 교부받으면 됩니다. 신고서에는 어업의 종류, 예정 조업장소, 사용 장비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거주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 등)도 요구됩니다. 관할 행정기관은 제출된 신고사항이 법정 요건에 부합하면 특별한 심사 없이 즉시 신고 수리하고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처리기간은 통상 즉시 또는 며칠 내로 매우 짧습니다. 신고한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어업을 폐지할 경우에도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면 계속 영위하려는 경우 재신고 절차를 밟습니다. 신고어업은 허가어업과 달리 수수료나 면허세 부과가 없거나 최소화되어 있으나, 지자체에 따라 약간의 수수료를 책정하기도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기관: 신고어업은 「수산업법」 제4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 절차와 서식은 수산업법 시행규칙 및 어업허가·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신고 대상 업종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됩니다. 예컨대해조류 채취, 소규모 통발어업, 투망어업 등의 일부 종류가 신고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관리하는 기관은 시·군·구청(지역 수산행정 부서)이며, 신고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신고 시에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시험어업, 연구어업, 교습어업처럼 학술·교육 목적의 어업도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신 정책 변화: 신고어업 분야에서는 어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육상양식장처럼 일정 규모 이하의 양식업도 신고제로 운영되었으나, 앞서 언급한 대로 현재는 허가제로 강화되었습니다. 그 대신 어획량이 극히 적거나 자급적 성격의 생계형 어업(예: 일부 맨손어업, 소형 나잠어업)은 신고 대상에 추가하거나 요건을 완화하여 어업인 부담을 덜어주는 추세입니다. 또한 전자민원 시스템 도입으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해지고, 신고필증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등 절차가 간편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어업 역시 남용 시 지역 자원 고갈 우려가 있어, 지자체별로 신고어업 총량 관리나 채취 금지기간 설정 등의 보조적 관리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책은 소규모 어업인의생계를 보장하면서 지속적인 자원관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신고어업 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4. 낚시어선업

정의 및 자격 요건: 낚시어선업은 낚시인을 어선에 태워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선상 낚시를 하도록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유료 낚싯배 운영업으로, 어업인이 자신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낚시어선을 이용해 일반인들에게 낚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영위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일정 신고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낚시어선으로 사용하는 배는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이어야 하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 선으로서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어선의 선장은 일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사업자는 해양수산부 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구명조끼 비치, 통신장비 구비 등 안전성 검사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갖추어야 신고가 수리됩니다.

신청 및 발급 절차: 낚시어선업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낚시어선업 신고서를 작성 하여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어선 번호, 어선명, 어선의 규모 및 설비사항, 선장 면허 정보 등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어업허가증 사본, 선박검사증서, 선장 해기사면허증, 교육 이수 증 등)를 첨부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신고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줍니다. 이 확인증을 받아야 정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계속 영업 가능하나, 5년마다 어업허가 갱신과 안전교육 이수 등의 사후관리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영업 중에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예: 어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선장이 교체되어 무자격이 되는 경우 등) 지자체장은 영업정지나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폐쇄 시 2년간 신규 신고를 금지하는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기관: 낚시어선업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라 관리됩니다. 2012년에 시행된 이 법은 취미 낚시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 관리, 자원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그 이전의 「낚시어선업법」을 대체했습니다. 주무부처는 해양수산부이며, 현장 신고 접수와 관리·감독은 시·군·구청에서 담당합니다. 법령에서는 낚시어선 정의, 신고 절차,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과 자원 남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낚시어선업자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예: 한국어촌어항공단의 낚시어선 종사자 교육) 어선 사고 예방과 환경보호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영업정지나 과태료, 형사처벌까지 부과될 수 있어 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최신 정책 변화: 낚시어선업 제도는 도입된 지 약 20여 년을 지나오면서 초기의 어업인 소득 보조 수단에서 현재는 레저산업의 한 축으로 그 위상이 변했습니다. 2011년 관련 법 개정으로 어민 소득증대 목적이 법에서 삭제되고 낚시인의 안전과 자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최근에는 낚시객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낚시어선 안전관리 기준 강화와 영업자에 대한 자격요건 상향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여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며, 이미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이용객 탑승인원 제한, 보험 의무가입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강화가 합헌임이 확인되는 등(무분별한 낚시어선 난립을 막아 자원을 보호하려는 공익 인정)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며 관리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낚시어선업은 국민 여가활동으로서 성장하는 한편,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5. 어업 관련 자격증

개요: 수산업 분야에는 어업인과 관련 종사자가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자격증**과 **면허**가 있습니다. 이들 자격은 어선 운항, 수산자원 관리, 수산물 유통·가공, 양식 기술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있으며,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하거나 소정의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주어집니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어업 관련 자격증들의 정의와 요건, 발급 절차, 관련 제도 변화 등을살펴봅니다.

• 해기사(해상 종사자 면허): 일정 규모 이상의 어선을 운항하거나 기관을 관리하려면 해기사 면허가 필수입니다. 해양수산부가 관장하는 국가시험을 통해 어선장·항해사·기관사 등 등급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안어선을 지휘하려면 연안어선장 또는 운항사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근해·원양어선의 선장은 항해사 1급등의 높은 등급 면허가 필요합니다. 응시 자격은 승무경력이나 해양계 학교 졸업 등으로 충족하며, 시험 합격 후해양수산부에 면허를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해기사 면허는 선원의 전문성과 안전운항을 보장하기 위한 자격

으로, 승무인원 및 어선톤수에 따라 적정 인원이 갖추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작은 낚시어선 이라도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와는 별개로 해수부 발급)를 요구하는 등 규정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 수산질병관리사: 양식 어류 등의 질병을 진단·치료하는 전문가로, 어류의사에 해당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 허를 받아야 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수산생명의학과 등 관련 학과 학사 이상 학력 요건이 있으며, 시험 합격 후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양식장 현장에서 어류 질병을 예방하고 처방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수의사법의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항생제 처방도 가능합니다. 2012년 첫 시험이 시행된 이후 매년 배출되고 있으며, 국립수산과학원 등 공공기관이나 사료·의약품 업체, 양식장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합니다. 어업현장의 수산생물 건강관리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문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수산질병관리사에게 양식장 질병 발생 시 방역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등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산지경매사: 수산물 산지위판장(어획물이 처음 경매되는 현장)에서 경매를 주관하는 전문 경매사 자격입니다.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국가자격시험이 도입되었습니다. 산지경매사는 어획물의 첫 가격 형성을 책임지며, 경매 우선순위 결정, 가격 평가, 낙찰자 결정 등 경매 전 과정을 주도합니다 8. 이 때문에 수산물 생산·유통 관련 지식과 법령 이해, 어종별 상품성 식별 능력 등이 요구됩니다 8. 시험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시행하며, 필기(수산생물학, 유통론 등)와 면접을 거쳐 합격하면 해양수산부 장관 명의의 산지경매사 면허를 받습니다. 산지경매사 자격증 취득 후 산지 위판장 운영자(보통 수협)에게 고용되어 경매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자격자에 한해 경매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제도 도입으로 500여 명 이상의 경매사가 배출되었으며 9, 수산물 유통관리의 전문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수산물품질관리사: 수산물의 품질관리와 유통 개선을 위한 국가자격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여 2002년부터 시행한 시험에 합격하면 수산물품질관리사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 소지자는 산지 생산자 단체나수산물 유통업체 등에서 상품의 등급 판정, 브랜드 개발, 위생·포장 관리, 유통 이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수산물의 위생 안전과 소비자 신뢰가 중요해짐에 따라 도입된 자격으로, 시험 과목은 수산학개론, 식품위생법 등이며 합격률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합격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자격 등록을 하고, 관련 업계나 정부기관(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 관리 전문가로 활동합니다. 최근 HACCP 등 식품안전 관리가 강화되면서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정부는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등에 해당 인력을 우선 배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격(수산양식기사 등): 이 밖에도 어업 분야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수산양식기능사·산업기사·기사는 양식기술 전문성을 검정하는 자격으로서 양식장 취업이나 창업 시전문성 인증 역할을 합니다. 수산제조기능사·기사는 수산물 가공 및 저장기술 분야의 자격이고, 잠수기능사는 해녀·잠수부 등의 잠수작업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입니다. 이러한 기술자격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Q-Net)이 주관하며, 합격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 비록 법적으로 필수 자격은 아니지만 어업현장에서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고 취업에 유리하며, 정부의 어업인후계자 선발이나 귀어 창업지원 사업 신청 시가산점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최신 동향: 어업 관련 자격증 제도는 수산업의 발전과 정책 변화에 따라 신설되거나 개편되는 추세입니다. 앞서 언급한 산지경매사처럼 어업인이 아닌 유통분야 전문자격이 새로 도입된 사례가 있고, 수산질병관리사처럼 양식산업 성장에 발 맞춰 등장한 자격도 있습니다. 정부는 수산업의 전문화를 위해 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대에 들어서는 어촌계장 등의 리더십 교육 인증, 레저낚시 안내인 자격 등 새로운 아이디어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해기사제도에서는 어선용 해기사 인력 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승무 경력 요건을 완화하거나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등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업인의 전문성 강화와 안전한 어업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격 제도가 지속적으로 정비·보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참고: 모든 어업 관련 자격취득자는 해당 분야의 법령 준수와 윤리 의식이 요구됩니다. 국가자격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시 자격이 취소되며,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반면 성실한 자격취득과 활용은 **어업 현장의**

전문성 향상과 **국민 신뢰 확보**로 이어져 어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도 지속적인 교육 지원과 제도 개선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 7 수산업법(水産業法)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1432

2 어업면허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5200000324

3 6 수산업법개정법률안 < 법제 < 지식창고 - 법제처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8096

4 육상양식장 허가제 전환 - 제주일보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11

5 육상 양식장도 허가제 · · 내달부터 시행 - 제주일보

https://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403

8 산지경매사 > 산지경매사란?

https://lems.seaman.or.kr/ProducerAuction/PAOutline/selectPAOutlineView.do

9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 최초 실시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교육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90286